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2010구합36183]



【전문】

【원 고】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피 고】 금융감독원장

【피고보조참가인】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7.

【주문】

]

-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5항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1. 기초사실

가. 종합검사

- (1)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종합검사(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 제3호 참조, 이하 '이 사건 종합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2006. 1. 1.부터 2009. 12. 2.까지의 기간 중 삼성경제연구소 주식회사(이하 '삼성경제연구소'라고만 한다)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등에 관한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영하지 않았고, 일상감사 및 보고서에 대한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외부 연구용역 관련 내부통제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2010. 5. 19. 참가인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참가인의 전·현 직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요구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하였다.

나. 언론보도

일부 언론은 2010. 3.경 '참가인이 2006년부터 3년간 삼성경제연구소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 80억원대의 용역비를 부당지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정보공개청구

- (1) 원고는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0. 6. 8.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하였다.
- (2) 피고는 2010. 6. 8. 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위 정보공개청구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0.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3) 피고는 2010. 7. 8.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검사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영업상 비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합검사

- (1)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종합검사(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 제3호 참조, 이하 '이 사건 종합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2006. 1. 1.부터 2009. 12. 2.까지의 기간 중 삼성경제연구소 주식회사(이하 '삼성경제연구소'라고만 한다)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등에 관한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영하지 않았고, 일상감사 및 보고서에 대한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외부 연구용역 관련 내부통제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2010. 5. 19. 참가인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참가인의 전·현 직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요구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하였다.

나. 언론보도

일부 언론은 2010. 3.경 '참가인이 2006년부터 3년간 삼성경제연구소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 80억원대의 용역비를 부당지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정보공개청구

- (1) 원고는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0. 6. 8.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하였다.
- (2) 피고는 2010. 6. 8. 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위 정보공개청구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0.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피고는 2010. 7. 8.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검사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영업상 비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